완주군시설관리공단 수영장 운영규정

[제정] 2026. 6. 12.
[개정] 2026. 9. 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완주군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완주국민체육센터, 이서문화체육센터, 완주군청소년수련관, 완주군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센터”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운영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이라 함은 센터가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 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수영장 및 서비스 이용을 별표 1의 양식에 따라 신청한 고객을 말한다.
2. “서비스”라 함은 이용자의 수영장 이용상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3. “등록일”이란 이용자가 수영장 및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날짜를 말한다.
4. “개시일”이란 해당 수영장이 제공하는 서비스 시작 날짜를 말한다.
5. “이용일”이란 개시일부터 사용허가 취소(환불) 신청한 날까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업무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4조(운영규정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운영규정의 내용은 홈페이지 게재 또는 약식으로 안내데스크에 게시하거나 인쇄된 수영장 이용자 준수사항 [별표 4]을 회원에게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 또는 수영장에 게시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센터는 필요한 경우 본 규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정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이용자가 변경된 운영규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수영장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운영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5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수영장 이용 및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센터 관계자가 요구하는 주의사항 및 시설 이용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당해 수영장이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을 보호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의 귀중품은 반드시 센터 관계 직원에게 맡겨야 하며, 보관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센터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④ 이용자는 센터 이용 전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센터 관계자에게 이를 알리고 안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회원증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고,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센터에 통지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⑥ 이용자는 이 운영규정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자의 권리) 이용자는 수영장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센터에 건의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게시 및 설명의무) ① 센터는 이용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시간대별 프로그램 내용

2. 프로그램 사용료
3. 소지품 보관 시 유의 사항
4. 이용자 안전 수칙 등 기타 필요 사항

② 센터는 이용자가 수영장 및 운동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설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의2(안전관리요원 및 강습지도자의 배치와 임무) ① 센터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수영장에 안전관리요원(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며, 안전관리요원은 임무 수행 중 강습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아니한다.

② 강습지도자(강사)는 담당 강습반 수강생에 대한 지도 및 안전 통제를 담당하며, 강습시간 중 수영장 전체 이용자에 대한 상시 감시 업무는 안전관리요원이 전담한다.

③ 어린이 강습의 경우 강습 종료 시점부터 수강생이 탈의실 등 안전구역으로 이동을 완료할 때까지는 해당 강습지도자가 인솔 책임을 진다.(단, 강습 종료 후 자유수영을 원하는 자에 대한 인솔 책임은 지지 않는다)

④ 안전관리요원 및 강습지도자의 세부 업무 범위와 시간대별 배치는 별도의 업무분장 규정에 따른다.

제3장 회원가입

제8조(회원의 종류) 이용자의 관리를 위한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월 회원”이란 1개월 단위로 각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센터에 납부한 이용자를 말한다.
2. “일일회원”이란 센터가 정한 일반 공개 프로그램에 명시된 시간에 자유이용 요금을 납부한 이용자를 말한다.
3. 월 수영강습 프로그램은 1인 1개 강습반 등록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회원의 자격) 수영장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센터에 이용 요금을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

제10조(회원의 자격 제한) 센터는 제9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병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2. 센터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소멸된 경우
3. 수영장 수심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수영장 수심에 따른 입장기준 이하의 어린이(신장 145cm이하) 및 노약자(고령자 및 신체적 약자로 보호가 필요한 이용자)로서 보호자가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성인 1명당 어린이 2명까지 동반 입장할 수 있다.

제11조(회원 모집) 센터가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모집 시기 및 방법은 센터 운영상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회원 모집 정원은 해당 수영장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센터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의2(강습반 개설·폐강 및 휴강 기준)① 강습반은 모집 마감 결과 등록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폐강할 수 있다. 폐강된 강습반의 수강신청자에게는 사용료를 전액 환불한다.

② 강습 개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강습을 휴강할 수 있다.

1. 담당 강습지도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강습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2. 해당 강습반 등록인원의 실제 참여율이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강사는 재량에 따라 휴강하거나 강습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휴강하는 경우 센터는 회원에게 이를 즉시 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회원가입 신청) ① 센터의 수영장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원하는 센터에 회원가입을 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회원에 가입하는 경우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다.
② 센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에 대한 공지는 적용 일자 15일 전부터 안내데스크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 기간이 종료된 후부터는 변경된 회비를 적용한다.
③ 사용료의 납부는 사용 당일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납입 일정은 센터가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

제14조(회원증) 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회원 자격을 갖춘 회원에게 회원증을 발급하며, 회원은 체육시설 이용 시 반드시 본인 회원증(카드)을 지참하여야 한다.
② 회원증은 명시된 회원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대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③ 월 이용 회원의 수영장 이용은 1일 1회로 한다. 회원은 관내 타 수영장을 교차 이용할 수 있으나, 당일 중복 이용은 불가하다.
④ 회원은 회원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센터에서 발급된 회원증을(은) 센터에 반 납하여야 하며, 분실이나 훼손 시에는 지체 없이 센터에 통지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회원증 재발급 시에는 센터가 정한 발급 수수료(1,000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반환 및 기간 연장

제15조(사용료의 반환 및 기간 연장) ① 회원이 사용 허가를 취소할 경우에 [별표2]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반환은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 회비를 납부한 사람이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일 이전 취소 :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반환

2. 일일 사용의 경우 : 당일 사용 취소 시 사용 개시 전이면 전액 반환, 개시 후에는 반환 하지 아니한다.

②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취소일까지의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 사용료를 30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2. 사용료 반환신청은 방문 신청으로 하며, 회원 본인이 직접 소정 양식의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된 회원증을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리인이 반환신청 시에는 회원의 신분 증, 기발급된 회원증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기간의 연장 등 관련 사항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연장 : 질병, 공무상 출장 등 객관적인 사유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

2. 개인적인 사유(여행, 간병, 미용시술 등)는 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위 1호와 관련 제출 서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나. 출장명령서 등 공무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기간 연장 신청은 월회원권 이용기간 만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이상의 장기입원인 경우에는 퇴원일로부터 2주 이내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시설 운영의 변경) ① 수영장의 운영시간은 평일 06:00부터 개장, 21:00 폐장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가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공지는 적용일 15일 전부터 안내데스크 및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센터는 사전에 정한 정기휴관일 이외에 행정지시, 시설의 정비·보수, 그 밖에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휴관 또는 휴장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휴관 또는 휴장을 하는 경우 센터는 회원에 대하여 이 기간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거나 기간을 연장한다.

제16조의2(실내온도 및 수온 관리기준) ① 센터는 이용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수영장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실내온도 및 수온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1. 실내온도 : 섭씨 24도 이상 32도 이하
2. 수온 : 섭씨 26도 이상 30도 이하. 다만, 어린이 강습 전용 수영조 등 필요한 경우에는 28도 이상 30도 이하로 다소 높게 유지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실내온도 및 수온을 정기적으로 측정(09:00시 기준)·기록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한다.

③ 제1항의 기준을 현저히 벗어나 이용자의 안전·건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센터는 일시 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회원자격의 소멸) ① 회원이 센터에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소멸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은 회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회원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원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센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수영장 및 서비스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4. 센터에서 정한 약관 및 기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5장 시설이용 및 손해배상

제18조(시설이용) 시설의 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원의 시설 이용은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회원증을 제시한 후 이용한다.
2. 회원의 시설 이용은 영업시간 내 등록된 시간대 프로그램에 한하여 1일당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3. 수영장 내에는 수영 모자를 필히 착용하며, 자유수영 시 튜브, 오리발, 스노클, 스쿠버다이빙 슈트 등의 수영용품 사용을 금지한다.

제18조의2(강습 방해행위에 대한 조치) [신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강습장 출입을 제한하거나 시설 밖으로 퇴장조치 할 수 있다.

1. 강습지도자, 안전관리요원 또는 관계 직원의 안전 및 시설 이용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지도·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2. 고성·소란, 강습레인 침범 등의 행위로 다른 이용자의 시설 이용 또는 강습을 방해하는 자
3. 본인 또는 다른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위험행위를 하는 자
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이용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퇴장 조치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센터의 귀책사유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 센터가 운영하는 체육시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신체상·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센터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손해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하였거나 이용자의 지병 또는 고의·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된다.

② 본인의 과실 또는 이용자 간에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③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 또는 기기가 파손되는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열쇠 분실 시 교체료 20,000원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20조(소지품의 보관) ① 이용자는 안내실에 중요 소지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는 이용자의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한 물건은 보관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소지품에 대하여는 센터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 센터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유실물의 처리) 센터 내에서 습득한 유실물(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귀중품 등)에 대하여는 「유실물법」 및 「유실물 시행령」을 준용한다. 단, 수영복, 수영모, 샤워용품 등 분실물은 습득일로부터 1개월간 보관 후 자체 폐기처분한다.

제6장 개인 사물함

제22조(이용자격) 개인 사물함은 수영장 월회원권을 소지한 회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23조(이용기간) 개인 사물함의 이용 기간은 3개월 단위 등록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선발기준) ① 개인사물함 이용자는 월회원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② 완주군에 주소를 둔 회원을 우선 선발한다.

③ 주소 확인을 위해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지참 시 우선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5조(보관책임) ① 개인사물함에 보관된 물품에 대한 관리상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② 이용자는 사물함 사용 시 반드시 잠금장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잠금 미비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③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물함을 훼손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26조(보관금지)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보관을 금지한다.

1. 현금, 귀금속 등 고가의 귀중품
2. 부패 또는 변질 우려가 있는 음식물
3. 인화성·위험물질
4.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물품

제27조(이용제한) ① 사물함 이용 기간 중 월회원권이 종료된 경우 개인사물함 이용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② 다만, 개인 사물함 이용 기간 내에 월회원권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도의 재신청 없이 이용 기간까지 기존 사물함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 사물함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물함을 훼손한 경우
2. 키를 분실하거나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④ 이용 자격이 상실된 경우 이용자는 지체 없이 사물함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8조(손해배상 및 분실 처리)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 사물함을 훼손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용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개인 사물함 키를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료 20,000원을 부과한다.

제29조(사물함 반환) ① 이용자는 개인 사물함 사용기간 만료일 기준 7일 전까지 사물함 키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은 경우 시설은 사물함을 개방하여 내부 물품을 별도 보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발생하는 분실·훼손 등에 대하여 센터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30조(보관물품의 폐기) ① 이용 기간 종료 후 회수되지 않은 물품은 별도 보관한다.

② 보관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는 폐기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31조(개인 사물함 운영수칙) 센터는 [별표3]을 개인 사물함 배치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가 운영수칙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장 기 타

제32조(수영장 이용자 준수사항) 센터는 [별표4]의 수영장 이용자 준수사항을 작성하여 수영장 내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가 준수사항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고지) 본 운영규정에 의거 센터는 별표의 이용 규정을 안내데스크 게시 또는 회원 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34조(기타) 본 운영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거래 관

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센터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부 칙(2026. 6.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운영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사항들은 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26. 9.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수영장 회원가입 신청서

사용자	성명		성별	남 □ 여 □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사용목적		□ 자유수영		
		□ 강습		
		□ 건강증진·재활·기타		
구 분		□ 일반 □ 대학생 □ 중·고생 □ 초등·유아		
감면사항		□ 군민 □ 경노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복지		
이용시설		수영장	금액	
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완주군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_____이용회원(월)에 가입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귀하의 수집된 개인정보는 완주군시설관리공단 운영 성과 관리를 위해 활용됩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정보 : 프로그램 신청시 기재한 내용(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전화)
   - 기본적인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요구하지 않으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작성일로부터 2년
4. 귀하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본 사업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신청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환불은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5조(사용료 반환)에 따라 월회원 신청서 상의 이용개시일 이전의 경우 전액 환불되며, 이용개시일 이후의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됩니다.
   ※ 월회원 이용료는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 환불금 산정 시 일일요금은 30일로 나눈 금액에서 10원 미만을 절사하여 계산합니다.

※ 민법 제160조에 의하여,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합니다.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위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동의안함 □

성명 (인 또는 서명)

완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표2]

수영장 환불 신청서

● 신청자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본인): (보호자):	환불사유	
은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가족은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성명):		

● 환불 안내사항

1.「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5조(사용료 반환)에 따라 월회원 신청서 상의 이용개시일 이전의 경우 전액 환불되며, 이용개시일 이후의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됩니다.

※ 월회원 이용료는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 환불금 산정 시 일일요금은 30일로 나눈 금액에서 10원 미만을 절사하여 계산합니다.

2. 환불금은 본인 명의 계좌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1부 제출(타인 계좌 환불 불가)

3. 환불 신청자의 은행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명의 은행계좌에 한하여 환불처리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사본) 1부 제출

4. 환불금은 환불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이체되며, 이체 일정 및 완료 여부는 별도로 안내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은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계좌,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입니다.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작성일로부터 1년이며, 보유기간 경과 및 동의 철회 시 개인정보는 파기합니다.

환불 안내사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위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동의안함 □

신청자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수영장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완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 아래 칸은 담당자가 기재하는 란으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 제 일		환불신청일		이용시작 /종료일	
① 결제금액	② 일일요금 (①/30)	③ 이용일수	④ 이용금액 (② * ③)	⑤ 일할계산 (① - ④)	⑥ 환불금액

[별표3]

개인 사물함 운영수칙

1. 개인 사물함은 수영장 월회원권을 소지한 회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 기간은 3개월 단위로 운영한다.

2. 완주군에 주소를 둔 회원을 우선 선발하며, 주소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미지참 시 우선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3. 개인 사물함은 타인에게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이용 기간 중 월회원권이 종료된 경우 사물함 이용은 불가하다. 다만, 월회원권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용 기간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4. 개인 사물함 내 물품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반드시 잠금장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미잠금으로 인한 분실·도난 등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5. 개인 사물함에는 현금·귀금속 등 귀중품, 음식물, 인화성·위험물질 및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물품을 보관할 수 없다.

6.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물함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하며, 키 분실 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사물함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 개인사물함 키 분실 시 분실료 20,000원이 부과된다.

7. 이용자는 개인 사물함 사용기간 만료일 기준 7일 전까지 사물함 키를 반납하여야 하며, 미반납 시 시설에서 사물함을 개방하여 물품을 별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8. 이용 기간 종료 후 회수되지 않은 물품은 별도 보관하며, 보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폐기할 수 있다.

[별표4]

수영장 이용자 준수사항

1. 수영장 내에서는 조용히 시설물을 이용하여야 한다.
2. 음주 후 수영은 금지한다.
3. 눈병이나 그 밖의 기타 전염병 환자는 출입을 금지한다.
4. 수영장 내에서 입수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반드시 준비운동 및 비누 샤워 후, 수영모를 착용할 것
   나. 밀거나 뛰지 않으며, 가운 또는 신발을 착용하지 않을 것
   다. 수심이 깊은 곳으로 어린이를 데려가지 않을 것
5. 수영장 내에서 수영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방뇨, 침뱉기, 코풀기 등을 하지 않을 것
   나. 수영장 내 다이빙을 하지 않을 것
   다. 몸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수영을 중단할 것
   라. 수영강사나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를 것
6. 신장 145cm이하 어린이는 반드시 성인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며(성인 1명 기준 어린이 2명까지 동반 입장 가능) 안전사고의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다.
7. 신장 145cm이하 어린이 단체 입장 시 20명 기준 보호자(20세 이상) 최소 7명 이상 (인솔 책임자 및 동행 학부모 포함)이 동반 하여야 한다.
8. 만 4세 이상 남·여 아동 혼욕입장 불가하다.
9.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10. 의사의 권고를 받은 고혈압 또는 의심환자는 사전에 의사와 상의 후 이용하여야 한다.
11. 실내 수영장에는 강습시간 외에 개인 물놀이 기구(스노클링), 오리발 착용을 금지 한다.
12. 어린이는 어린이 풀장을 이용하여야 한다. 단, 강습 시간 외 성인풀 이용은 보호자가 수중 동행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강습이 끝난 직후 보호자 없이 성인풀에 재입수할 수 없다.
13. 수영장 내(탈의실, 샤워실, 체온조절실)에 음식 반입·섭취, 염색, 빨래, 마사지를 금지한다.
14. 개인 소지품 및 귀중품은 안내데스크에 보관하여야 하며, 분실 시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15. 수영장 내에서 개인 강습은 금지하며, 적발 시 퇴장 조치한다.

[별표5]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11조 및 14조]

완주군 실내수영장 사용료

구 분	사용료(단위:원)		비 고
	1일 입장	1개월	
일 반	3,500	70,000	○ 수영장 이용 13세이상 58세미만 여성 1개월 회원권 발급시 5일간 연장 ○ 감면금액중 50원 이하는 절사한다
대 학 생	2,500	70,000	
중、고등학생	2,000	40,000	
초등학생、유아	1,300	30,000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 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및 군·경행사
3.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4. 「완주군민의 날 조례」 제2조에 따른 완주군민주간에 완주군민이 사용하는 경우. 다만, 수영장 사용은 제외한다.
5.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도민 및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군민이 사용하는 경우. 다만, 수영장 사용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및 방과 후 활동
2. 완주군에 전지훈련 온 선수단
3. 국가, 전라북도 또는 완주군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경기연습을 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16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유아, 어린이 및 경로대상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1. 완주군민으로 구성된 팀이 체육 시설 중 운동장(축구장, 야구장 등을 포함한다)을 전용사용 하는 경우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이전 소속 직원 및 가족으로서 완주군에 거주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등록단체. 다만 완주군 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군수는 완주군민에 한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별표 3, 별표 4)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1. 완주군민이란 사용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단체신청의 경우 완주군민이 과반수(2분의 1)를 초과하여야 한다.

⑤ 체육시설 사용료 할인 적용시 중복 해당할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註. 자원봉사자(완주군시설관리공단 수영장 4개시설 공통 무료로 진행)
30% 감면 :완주군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로서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실내수영장 이용자

[별표6]

수영장 이용자 안전수칙

1. 이용자는 연령 및 개인의 신체능력에 맞는 운동량을 준수한다.
2. 수영장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절대 뛰지 않는다.
3. 식사 후 충분히 소화를 시킨 후 체육활동을 한다.
4. 고혈압 및 질병(눈병, 피부질환 등), 과로 등 신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용을 자제한다.
5. 입수 전 물의 깊이를 확인한다.
6. 입수 시 심장에서 먼 부위부터 물을 적시며 천천히 들어간다.
7.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절대 다이빙을 하지 않는다.
8. 수영 시 입수시간(50분)과 휴식시간(10분)을 지킨다.
9. 체온조절실 이용 후 수영장에 바로 입수하지 않는다.
10. 탈의실 및 샤워실을 청결하게 사용한다.
11. 14세 미만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반하여야 한다.
12. 술을 마시고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13. 운영자(지도자) 또는 안전요원의 안내를 따르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설 이용이 중지될 수 있다.
14. 이용 중 장비 고장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 지도자 또는 안전요원에게 알리고 조치를 받는다.
15. 체육시설 내 금연이며,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한다.

[별표7]

수영장 어린이 안전수칙

1. 수영장 이용 전

- 입장 전 반드시 샤워를 하고, 샤워실 내에서는 뛰지 않는다.
- 보호자는 어린이와 함께 입장하며, 눈에 보이는 거리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 준비운동(스트레칭)을 충분히 한 후 입수한다.
-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식사 직후에는 입수를 자제한다.

2. 수영장 이용 중

- 안전요원의 안내와 지시에 따른다.
- 수영장내에서는 다이빙(입수 점프)을 하지 않는다.
- 수심이 깊은 구역은 임의로 출입하지 않으며, 시설의 이용기준과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른다.
- 물속에서 밀거나 잡아당기는 등 장난을 치지 않는다.
- 튜브·구명조끼 등 보조기구 사용 시에도 보호자 감독을 유지한다.
-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며 수영하지 않는다.
- 유아풀과 성인풀 이용 구역을 구분하여 지킨다.
- 수영장 내에서 뛰는 등 미끄러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

3. 응급상황 대응

- 몸이 아프거나 어지러움, 경련(쥐)이 느껴지면 즉시 손을 들어 안전요원에게 알린다.
- 다른 어린이가 위험해 보이면 직접 구조하려 하지 말고 즉시 안전요원을 부른다.
- 호루라기 신호(휴식·긴급상황 등)를 사전에 숙지시킨다.

4. 이용 후

- 퇴수 시 미끄러운 바닥에서 뛰지 않는다.
- 샤워 후 몸을 잘 말리고 이동한다.
- 보호자는 인원(동반 어린이 수)을 반드시 재확인한다.